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
------	----

제출년월일 : 1999. 3. 16.

제출자 : 고성군수

1. 개정사유

- 현행 조례중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일부조항과 맞지않아 이를 보완하고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 (안 제9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지정 (안 제9조의2)
-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및 매각대상등을 규정 (안 제9조의3)
- 매각대금을 10년이내 연5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청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와 국유재산법시행령제44조의2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등으로 규정함 (안 제20조의1항)
-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8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안 제21조 2항)
- 매각대금을 20년이내에 연4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안 제21조 4항)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산정 (안 제22조의8항)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군유재산 대부·임대 또는 사용허가시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 신설 (안 제22조의2)

- 대부료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 (안 제25조)
- 폐천부지의 매각면적을 상향조정 (안 제38조의2)
-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면규정 신설 (안 제38조의4)

3.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관련(관보제13957호 : 98. 7. 16) 후속 조치
-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표준안(도 회계13330 - 10441 : 1998. 8. 25)

4. 본 문 : 불임과 같음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부동산과 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 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외국인 투자자 기업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 제89조, 제90조 제1항 제2호,

제91조 제3항, 제92조의2, 제95조 제2항 제27호, 제96조 제10항, 제10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대상 등)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19조를 "삭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삽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불

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④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4.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제2항 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제6항 중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⑦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 투법"이라 한다) 제13조 제

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라. 전체사용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로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
업

바. 가로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 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3조제4항 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
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	------------------------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
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

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 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 영 제95조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자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 영 제95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

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95조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읍·면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군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

-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 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 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 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 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 용지내의 재산

제48조 ~~제48조~~ · 군수 · 부군수 · 시장 · 동·군수 · 원무·증인·증명부서 ·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온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생략) 1. 보상금액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 하까지는 100분의 20까 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 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 정할 수 있다. 2. (생략) ②(생략)	제5조 (온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현행과 같음) 1. 부동산시가표준액에.....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9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 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 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 악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 조 제1항 제10호, 제89조, 제90조 제1항 제2호 제91조 제3항, 제92조의2, 제95조 제2항 제27 호, 제96조 제10항, 제100조 제2항 제5호의 규 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p>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u> <u>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u> <u>공유재산</u></p> <p>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 <u>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u> <u>내의 공유재산</u></p> <p>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u>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u> <u>인된 지역의 공유재산</u></p> <p>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 <u>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u> <u>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u></p> <p>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u>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u></p> <p>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u></p>
<p>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분한 잡종 <u>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u>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는 규정을 계</u> <u>약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u> <u>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19조 (삭제)</p>
<p>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 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p>	<p>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 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p>

현 행	개 정 · 안
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 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제1호 이외의 금액에 초과하는 잡종재 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 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 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 지를 매각할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 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 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 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 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군수가 경영수의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 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 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 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에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 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p>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p> <p>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 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95조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2. 제39조의2 제5항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p> <p>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p> <p>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p>

현 행	개 정 안
	<p>곧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p> <p>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의 개발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4.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p>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p> <p>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분은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p> <p>③~⑤(생 략)</p> <p>⑥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고성군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p> <p>⑦ 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p> <p>.....</p> <p>.....</p> <p>.....</p> <p>토지시가표준액</p> <p>.....</p> <p>③~⑤(현행과 같음)</p> <p>⑥</p> <p>..... <u>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u> 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p> <p>.....</p> <p>⑦ (삭 제)</p>
신 설	<p>⑧ 영 제88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p>
신 설	

현 행	개 정 안
	<p>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제22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외. 투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p> <p>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라. 전체사용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p>
신 설	

현 행	개 정 안
	<p>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 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내 이전하는 사업</p> <p>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예관 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hr/> <p>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 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예관 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현 행	개 정 안
	<p><u>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u></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p> <p>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예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중설하는 사업</p> <p>사. 제19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p>
제23조 (토석채취료 등) ① ③(생략)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토석채취료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현 행	개 정 안
⑤(생략)	⑤(현행과 같음)
제24조(건물대부로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로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4조(건물대부로 산출기준)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 (대부료의 납기) ① 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p> <p>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분한 재산에 대하여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p> <p>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분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p> <p>② 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5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③ 경작목적으로 대부분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자연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p>	<p>제27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p> <p>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p>

현 행	개 정 안
	수 있다.
	<p>③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 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 를 일정기간 감면 할 수 있다.</p>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생략)	<p>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현행과 같음)</p> <p>② ~ ③ 삭제</p>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 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 담부서에서 총괄재 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제38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 우)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 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p>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 영 제95 조 제2항 제25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 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 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p> <p>③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는 읍·면지 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 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등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아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 할 수 있다.</p>	<p>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1.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p> <p>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p> <p>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 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동기를 하여야 한다.</p> <p>⑤ 영 제95조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읍. 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 폐재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p>

현 행	개 정 안
	<p>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군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신 설	<p>제38조의 4(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 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총</p>	<p>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등법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p> <p>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p> <p>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p> <p>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p> <p>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p> <p>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등 부대시설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p>

현 행	개 정 안
	<p>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외·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p>
	<p>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p>
	<p>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p>
	<p>⑤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p>

현 행	개 정 안
	<p>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 산</p> <hr/> <p>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 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 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hr/> <p>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 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p>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등 소속공무원의 사용 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	제48조(정의)..... 군수, 부군수.....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p>1. 1급관사 : 군수관사</p> <hr/> <p>2. 2급관사 : 부군수관사</p> <hr/> <p>3. 3급관사 :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관사</p>	<p>1. 1급관사 : 군수관사</p> <hr/> <p>2. 2급관사 : 부군수관사</p>
제55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사를 사 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 해 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6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p>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의 규정에 의 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hr/> <p>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p> <hr/> <p>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hr/> <p>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p>

현 행	개 정 안
<p>1.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p> <hr/> <p>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p> <hr/>	<p>무원이 사용하는 경우</p> <hr/>
<p>우</p> <hr/>	